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영역

2023년 5월 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
·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목차

목차	2
총론	4
에너지·생태 영역	7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대	8
석탄 발전 지원예산을 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산으로 전환	9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	10
녹조 대응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관련 예산 증액	11
녹조 독소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12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예산 증액	13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14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	15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16
바다 위 부유식 원전 설비 개발사업 지원 중단	17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	18
어구실명제·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	19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 위상에 맞는 국립공원 관리예산 배정	20
국립공원 기존 시설 재정비 예산은 최소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재정비는 최대로	21
MAB 부의장국 수준에 맞도록 BR 내 개발사업 전격 취소	22
국립공원 해제하여 건설하는 죽음의 흑산공항 백지화	23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이동지역에 단 1km 설치하는 산악열차시범사업 협약 취소	24
동물 영역	25
살처분 일변도 벗어나 과학적 방역체계 위한 예산 확대	26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 우유급식 예산 대폭 삭감	27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보조금 비율 50% 이상 예산 편성	28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 대폭 증액	29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에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30
말 산업 육성에 ‘말 복지’ 사업 예산 편성 필요	31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신 농작물 피해 ‘예방책’ 마련 중심으로	32
장애인·빈곤 영역	3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34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3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3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3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39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40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 임금 인상, 근로능력평가 폐지	41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42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43
사회공공성 영역	44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45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예산 삭감	46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47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48
돌봄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충	49
도시철도 무임수송액 국고 보조	50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 예산 신설	51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 부담 확대	52
광주·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확충	53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지원비율 상향	54
모성보호지원 일반회계로 전환	55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56
국민연금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5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58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보험료 지원 확대	59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60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61
내일이룸학교의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62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설	6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64
청년조기중재센터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	65
노동 영역	66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요구	67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사회보험료 지원	68
근로감독관 증원	69
민간·가정 어린이집교사 차별 해소 예산 확충	70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71
평화 영역	72
안보 딜레마 격화하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73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총론

-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임. 2023년 예산이 집행되는 올해는 2022년도 결산도 진행됨. 이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음.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함. 이후 기재부와 각 부처는 8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부안을 만드는데 정부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
- 현재 각 부처는 기재부에 요구할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작성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나라예산 감시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 각 부처가 작성 중인 2024년도 예산요구서에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함.
- 2024년 정부 예산 지침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순’임. 목표와 실행계획 사이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임. 첫째, ‘건전재정’을 말하면서도 재벌기업 감세 정책을 유지, 확대함. 둘째,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면서도 국가가 구체적 투자처를 정하고 정부 재원을 불균형하게 지출함.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면서 보편적인 지원을 줄이고 시혜성, 선택적 지원으로 전환함. 즉, 정부의 정책은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적용하는 비일관된 모습을 보임. 또한, 재정의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혼동하면 안 됨. 재량지출 감축,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은 그동안 매년 반복돼왔던 관행적 목표임. 이제는 구체적 실행계획 차원에서 논의될 과제에 불과함. 이러한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제한적임.
- 예산은 어떤 이론적 수식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설득과 타협 때로는 투쟁을 통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만들어가야 함. 정리하면 세금과 기여금이 얼마나 많이 걷히고 국가는 어느 정도의 돈을 지출해야 할지 총량을 정하는 데에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또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어떤 부문, 어떤 프로그램 또는 세부사업에 제한된 예산을 분배해야 할지 올바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¹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나라살림연구소, 동물권행동카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하지만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고민과 논의해야 할 지점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조차 부재한 실정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내년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2024년 나라예산 감시 공동행동'의 원칙과 의견을 말하고자 함.
- 첫째, 국가 살림의 원칙을 정확히 인식해야 함. 국가 지출의 원칙은 가정 살림과 반대로 경기가 부진할 때 지출을 늘리고, 경기가 과열될 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흑자재정 또는 적자재정을 오가며 동태적 균형점을 찾는 것임.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지 또는 확대재정을 펼쳐야 할지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재정의 트릴레마를 정확히 인식하고 균형점(golden mean)을 찾아야 함. 재정의 트릴레마란 국가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세수증대 또는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재정의 트릴레마를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우려됨. 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 등을 과감하게 지원한다고 함. 동시에 법인세율을 줄이고 특히, 반도체 등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았음. 또한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기조를 강화한다고 함. 그러나 어떠한 정부도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줄이고 부채를 줄일 수는 없음.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트릴레마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출과 세금, 부채 수준의 균형점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단순히 지출 구조조정 만으로 재정의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는 없음.
- 셋째,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대해 다방면의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이번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함. 특히 시민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안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 이번 예산요구안 중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함.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으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에 예산을 보장해야 함. 또한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 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함.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함. 마지막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함.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에너지·생태

영역

재생에너지 증대,
석탄 및 원자력에너지
예산은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

내륙 및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확대 및 예산 증대
개발사업 예산 전액 삭감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대

1. 현황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30년 21.6%, 2036년 30%로 제시.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 수준인 현재도 계통 유연성 부족, 잉여전력 활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과정에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과 섹터커플링 활용 확대는 필수적.
- 그러나 2023년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은 2022년 대비 50%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 기술개발’ 예산 역시 5.6% 감소.
- 또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구축 예산의 2021년 예산 집행률은 30.3%에 불과하고, 이중 송전 부분은 전액 미집행. 특히 감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업종료 후 통신료 부담, 개발 인력 부재 등이 사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재생에너지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	6,000	6,000	6,000	3,000	3,000	▽3,000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	-	6,000	6,000	5,663	5,663	▽337

2. 요구사항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대하고, 예산 집행을 제고 대책 마련.
-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예산 증대.

석탄 발전 지원예산을 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산으로 전환

1. 현황

- 국내 탈석탄 기조가 분명해진 시점에서 전반적인 석탄 투입 예산은 축소 및 일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석탄 채굴 여건 악화 및 화석연료 산업 퇴조 추세에 따라 2004년부터 적자 누적 상황. 완전자본잠식상태까지 달한 석탄공사가 정부의 출자금 지원으로 계속해서 땀질로 수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 2021년 대한석탄공사는 1,04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적자 규모는 2018년 652억 원에서 매년 증가.
- 또한,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같은 항목 역시 국회 상임위가 비축속도, 재고 무연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듯이 퇴조가 분명한 석탄의 무조건적인 구매, 비축을 지양할 필요.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역시 매년 11억 원 가량 지출이 지속.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석탄비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와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2020년에 사업계획 미흡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
- '무연탄발전지원'과 같은 항목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국내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손실까지 발전사에 보전해주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오히려 탈석탄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발전사의 손실은 더욱 늘어나 2022년에 전년대비 5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이후 올해도 유지.

<표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대한석탄공사 출자	28,469	27,143	23,614	▽3,529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273	2,137	2,066	▽71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88	1,188	1,224	△36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 한시적지원	14,960	19,713	19,757	△44

2. 요구사항

- 석탄발전지원예산은 석탄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 국내 무연탄 산업을 안정적으로 종료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폐업 지원, 노동자 지원 등의 예산으로 변경.
- 석탄비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

1. 현황

- 핵폐기물 관리, 안전 문제, 부지 확보 등에서 상용화 어려우며, 경제성 또한 떨어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그런데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에 2023년 76억여원의 신규 예산 편성.
- 핵융합연구분야의 경우, 현재 핵융합 기술 연구 수준으로는 에너지 생산의 손익분기점 도달도 요원할뿐더러 2040년에도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기술적 실현 및 상용화의 난제가 산적. 기후위기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서 핵융합 에너지는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
- 또한 아직 전력 에너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 기초연구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음.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과기부 예산은 다른 대체 에너지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연구 등으로 재원을 사용하고, 산자부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

<표3> 관련 과기부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률(B-A)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기술개발사업(R&D)	0	0	3,870	순증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67,100	65,856	56,980	▽13.5%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R&D)	800	4,086	5,528	△35.3%

<표4> 관련 산자부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률(B-A)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기술개발사업(R&D)	0	0	3,870	순증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67,100	65,856	56,980	▽13.5%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R&D)	2,592	6,313	3,799	▽39.8%

2. 요구사항

-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
- 핵융합 관련 과기부 예산의 경우 원전의 해체 및 안전기술 등의 연구지원 예산으로 전환, 산자부 예산의 경우 전액 삭감.

녹조 대응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관련 예산 증액

1. 현황

- 2021년 2월 의결된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 및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임. 시설개선 예산의 확보로 보 개방확대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4대강의 녹조 문제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
- 4대강,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각 구간이 호소화, 녹조의 위협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됨. 이를 위해 보가 원활히 개방될 수 있도록 취·양수시설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표5> 환경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정부안	확정(B)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1,121	71,181	70,980	122,308	84,856	84,856	△19.2%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929	○ 건설보상비(44,929백만원) : - 금강, 영산강 유역 시설 개선 보상: 14,169백만원 - 한강, 낙동강 유역 시설 개선 보상 : 30,760백만원	53,600	○ 건설보상비(53,600백만원) : - 영산강 유역 시설 개선 보상: 4,240백만원 - 한강, 낙동강 유역 시설 개선 보상 : 49,360백만원

2. 요구사항

- 예산 증액을 통해 조속한 공사 완료 및 계획기간 내 완결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녹조 독소 위협 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1. 현황

- 4대강 사업의 여파로 환경 관련 악영향에 더불어 심화된 녹조 오염이 인간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 향후 4대강 사업의 여파가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 모니터링은 더욱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 4대강 유역에서 대량 발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직접 접촉뿐만이 아닌 농작물 축적, 수돗물, 심지어는 공기 중에서도 발견되는 사태가 발생함. 유통 중인 농작물의 녹조 독소 축적 여부 전수조사, 수돗물 및 에어로졸 분석 등 실생활 중 노출될 수 있는 녹조 독소의 조사 및 분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표6> 환경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78,460	81,357	80,610	83,691	68,221	68,721	▽15.5%

2. 요구사항

- 녹조 독소 조사·분석 및 독소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녹조 독소 관리를 위한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확립 및 녹조 독소 분석 과정·결과의 투명성 보장
- 녹조 관리 실패로 대표되는 정부의 위험관리 부실로 인한 신뢰 저하 회복을 위해 민간, 전문가, 관이 함께하는 녹조 독소 공동 조사 거버넌스 수립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예산 증액

1. 현황

- 보와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은 하천의 연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임.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아 수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질오염을 유발.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로, 지류·지천의 길이 대비 횡단구조물 수는 km당 약 1.2개임. 이는 다른 EU의 주요 국가(독일, 0.5개/km)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임. 현재 데이터 상 용도 상실,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되어있는 보의 숫자는 약 4,000개에 달함.
- 전 세계적인 하천 건강성 훼손으로 담수 생물의 개체 수는 가파르게 하락 중임. 환경부의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민물 생태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3년차인 ‘23년 예산은 오히려 축소, ‘22년 보다 4개소 축소된 8개소의 철거계획에 그침.

<표7> 환경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정부안	확정(B)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10,536	7,500	-	6,750	6,000	6,000	▽20.0%

2. 요구사항

- 조정된 예산안은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사업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결정. 생태계 복원과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
- 대상지 추가 발굴 등 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 필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1. 현황

- 수자원공사가 2009년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7년 1조 6천억 원이던 부채가 2012년 13조 8천억 원으로 750% 증가. 4대강 사업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 원리금 12조 4,000억 원 (원금 8조원) 가운데 6조 8,000억 원(54.8%)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조 7,754억 원을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으로 집행. 남은 4조 246억 원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 한편 수자원공사는 2010년 3,083억 원, 2013년 3,481억 원, 2014년 2,9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다 2015년 4대강사업을 통해 5조 8,000억 원의 손실 발생했다며 광역상수도과 담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 이를 통해 2017년 순이익 1,849억 원, 2018년 순이익 2,402억 원을 결산.
- 4대강 사업 투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국민혈세로 4대강사업을 통해 2009~2012년 사이 직원들에게 225%의 성과급을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인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공사 사장 1억800만 원, 임직원 93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

<표8> 환경부 일반회계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수자원공사 지원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00,000	▽11.8%

2. 요구사항

-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단지사업, 수도사업 등을 통한 자체 수익,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자체자금으로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

1. 현황

- 환경부가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비로 2023년 20억원을 신규로 책정. 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호강 일대를 수상·수변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
-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비의 세부 추진 항목을 보면,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금호강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예정지는 이미 과도한 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아닌 복원이 필요한 상황. 본 사업 추진으로 달성습지와 안심습지, 반야월습지 등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습지환경이 개발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
- 또한 사업 내용 중 이미 산책로가 잘 닦여 있는 구간과 중복되는 사업 진행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세금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존재.

<표9> 환경부 일반회계 관련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정부안	확정(B)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신규)	-	-	-	-	2,000	2,000	순증

2. 요구사항

-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예산 전액 삭감.
- 세금 탕진,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업 지원에 대한 재고 필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1. 현황

- 우리나라는 나고야 협약 비준국으로 202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1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IUCN 기준 2.46%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수준이 낮은 수준.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최소 30%~50%의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과학계와 NGO의 요구사항.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P4G, G20 등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선언.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영해기선 2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영해기선 20%는 관할수역의 약 5%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평가 역시 필요.

<표10>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해양보호구역 관리	5,549	11,420	11,420	15,729	15,093	△32.2%

2. 요구사항

-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개별적 로드맵 수립과 예산 편성.
-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태조사 예산 편성(열린 재정에서 세무 예산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바다 위 부유식 원전 설비 개발사업 지원 중단

1. 현황

- 해수부가 바다 위 부유식 소형 원전 설비 개발 연구사업을 올해 신규로 편성.
- 모순적이게도 해수부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이후 해양방사능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탐지와 예측 기술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원전 개발을 추진하는 격.

<표11>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용융염원자로(MSR) 혁신기술개발	-	-	-	400	400	순증

2. 요구사항

- 바다 위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개발 연구사업 예산 지원 중단.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

1.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사망. 특히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나라에서 혼획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이에 정부에서는 고래류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보급을 위한 예산은 2021년 이후로 비편성.
- 어업 현장에서는 혼획 저감 어구의 높은 비용과 어획 손실률에 대한 우려로 혼획 저감 어구의 사용률이 낮은 상황.

<표 12>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	-	809	-	-	-

2. 요구사항

-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예산 편성 및 증액.

어구실명제·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

1. 현황

- 2022년 1월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체계화됨
- 관리되지 않는 어구는 바다에 폐기되거나 유실돼 유령어업으로 해양생태계의 붕괴를 유발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4천억 이상의 어업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어류 외 생태계 시스템과 해양생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을 고려할 때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됨
- 어구실명제와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 안착, 폐어구 수거, 회수시설 운영 등의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

<표13> 어구보증금제 운영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7월 기준)	요구안	조정안(B)	
어구보증금제	111	300	202	2,310		

※ 세부내역에서 조정금액 확인 불가

2. 요구사항

- 어구실명제 시스템 정비와 어구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예산 400억 순증 필요
- 41개 허가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모든 어업의 어구실명제와 보증금제 시행 필요
- 전단계별 확장을 고려해 전체 어업의 46%에 달하는 연근해 자망, 통발, 안강망 어업을 대상 선시행
- 연간 유령 어업 피해액의 10%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의 공존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 위상에 맞는 국립공원 관리예산 배정

1. 현황

- 국립공원은 한국 국토면적 중 육상국립공원이 4%, 해양영토면적 중 해상해안국립공원은 0.6%로 국토 및 해양영토 면적을 합쳐 단 1%만 지정되어 있음.. 국내 기록 생물종의 45%가 생육·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의 60% 이상이 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어 한국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국립공원공단, 2022).
- 국립공원은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이나, 2023년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리산국립공원 산악열차, 케이블카 설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설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개발 광풍이 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함.
- ‘국립공원공단출연’ 예산항목 내 공원환경관리, 공원자원조사, 공원자원모니터링, 동식물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지표는 ‘착한탐방안내 지도장 발급건수’ 단 1건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집행 및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의 수행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 국립공원내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전지구 등 국립공원 핵심지역 등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른 공간계획과 차별화 된 예산 및 사업이 집행 되고 있지 않음.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한 사유지 매수, 면적 확대 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가능한 지표 마련 필요.

<표14>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출연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국립공원공단출연	193,977	218,642	224,083	5,441

2. 요구사항

- 기존 시설물 관리 및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 삭감.
- 특별보호구역 지정, 및 공원자연보전지구 등 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수를 포함한 관리예산 증액 (기존 예산 내에서 항목 간 전환).
- 해상해안국립공원 연안 및 도서 쓰레기 수거 사업 비용에 대한 현장 협력을 위한 공동예산 마련 또는 즉시 처리비용 예산 증액(기존 예산 내에서 항목 간 전환).

국립공원 기존 시설 재정비 예산은 최소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재정비는 최대로

1. 현황

- 국립공원은 국가의 생물다양성 및 고유종을 보전하는 공간임에도 야생생물 및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3년 예산에는 주차장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최대 467% 증가하여 국립공원 관리를 단순 물리적 시설물 관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무장애탐방인프라 정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일하며, 현재 추가 조성하는 인프라 대부분이 기존 탐방로 중 평지 또는 폭이 넓은 길을 무장애탐방로로 지정하여 실제 장애인, 이동불편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함. 일부 구간에는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이 마찰로 인해 이동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무장애탐방로 실적으로 삼고 있음.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예산의 성과 지표는 ‘국립공원 시설 만족도’ 1개 항목만 있음. 예산 항목은 매우 다양하나 ‘시설 만족도’로 뭉뚱그려 무작위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와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국립공원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물 정도로 판단하여 이용만족도 산술평균을 내는 것으로 보임.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보전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각종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한 바 있음.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다시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 있음.

<표15>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33,647	225,694	286,419	60,725

2. 요구사항

- 공원시설 재정비 예산 최소화 운영, 기존 무장애탐방로 재정비를 위한 자문회의 및 공사비로 전환.

MAB 부의장국 수준에 맞도록 BR 내 개발사업 전격 취소

1. 현황

- 한국은 1980년대부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UNESCO Man And Biosphere)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첫번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이하 BR)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정하였고, 세번째 BR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함. 2022년 한국은 제34차 MAB국제조정이사회 참석하여 부의장국으로 재선출됨.
- 당사국이자 부의장국인 환경부는 설악산 BR 내 산양 이동통로 단절과 아고산대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여 MAB 부의장국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다도해 BR 내 흑산도 예리지역의 국립공원구역을 해제 결정하여 중첩된 보호지역 전체를 해제, BR에서 제시하는 핵심지역, 완충지역, 연구지역 등 BR 공간관리계획을 훼손하고 지정 목적 자체를 훼손하였음.
-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해당 활동보다는 해외출장비 등에 대한 요구를 하는 등 국가 정책에 관한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 최소한 BR로 중첩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확실한 보호, 기존 개발 계획 전격 취소가 요구되고 있음.

<표16> 환경부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196	200	191	△9

2. 요구사항

- 해외 출장비를 최소화하고, **BR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를 위한 항목 예산이 증액되도록 전환.**

국립공원 해제하여 건설하는 죽음의 흑산공항 백지화

1. 현황

- 국립공원에는 자연공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원시설물이 별도로 정해져있음. 2008년~2010년사이 자연공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항’이 공원시설물이자 공익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이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국립공원 매립 및 구실잣밤나무 등 중요 생태계 훼손, 주요 철새이동경로 내 공항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업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계속함. 하지만, 2023년 1월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존 갈등사항 및 문제지점 사항을 배제한 채 ‘국립공원 부분 해제’라는 꼼수를 사용하여 활주부지의 공원구역 해제에 성공함.
- 현재 반영된 예산에는 현재 물가상승률 및 섬지역의 물류 이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예산 증액 등이 예상됨. 또한, 공항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비용 및 보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 흑산공항이 소형신공항으로서 도입 예정인 경비행기는 최근 네팔에서 탑승객 전원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참사를 발생시킨 ATR72항공기라는 점에서 탑승객 및 공항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운영되어서는 안됨.

<표17> 국토교통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8,100	7,100	△1,000

2. 요구사항

- 예산전액삭감.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이동지역에 단 1km설치하는 산악열차시범사업 협약 취소

1. 현황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산악벽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술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지를 공모하여 전라북도 남원시가 우선협약 대상지로 결정됨.
-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자체로, 현재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기리' 마을 1km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를 관통하는 전체 22km 노선의 산악열차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비는 시범사업 1km 노선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21km는 남원시 또는 민간 투자를 받아 진행해야하나, 남원시는 현재 21km를 추가로 건설할 비용이 없어 국비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힘.
- 사업 구간은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이 중점 추진되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으로, 반달가슴곰이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진 공간임. 사업자와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통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1km 남짓한 시범사업과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전체사업은 탄소를 포집하는 산림의 훼손과 탐방객 밀집을 야기시킬 뿐 탄소중립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임.

<표18> 기획재정부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B-A)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R&D)	4,685	7,203	7,203	-

2. 요구사항

- 예산전액삭감 또는 남원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협약 취소.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동물

영역

동물과 공존 위한
보호·복지 예산 편성하라

살처분 일변도 벗어나 과학적 방역체계 위한 예산 확대

1. 현황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살처분을 고수하나,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매년 동물과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소모가 크며 매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초래함.
- 2020~2021년 AI 발생 시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시행된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가의 요구가 이어지며 범위를 1km로 축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3천만 마리의 동물이 살처분되며 역대 두 번째 규모 피해를 남김. 2019년 ASF 발생 시에도 파주, 연천 등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며 과도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최근 한국돼지수의사회에서도 “행정지구 단위의 권역별 방역이 아닌 바이러스 확산 위험 거리별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23년 살처분 보상금 예산에 비해 가축방역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고 부족한 상황임. 가축전염병 발생 후 조치인 살처분보다는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과 가축방역 인력 운용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수적임. 예방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배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²

<표19>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및 가축방역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살처분 보상금	195,344	55,795	50,215	△5,580
가축방역	24,281	37,944	36,804	△1,140

2. 요구사항

- 철저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며 살처분 보상금 점진적 삭감 요구.
-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가축방역 예산 증액 필요.

²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 마리... 무너지는 살처분 ‘최후의 방어선’”, 한겨레, 2019.02.23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 우유급식 예산 대폭 삭감

1. 현황

- 축산물수급관리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일환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축산물수급안정(경상/위탁), △생계 및 소득안정 △학교우유급식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등이 있으며, 이 중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47,040백만원('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음.
- 국산 우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산 우유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임. 과거 분유 재고량 근거로 산출하여 제시된 달성도를 보면 지난 2020년 1만 톤 이상의 재고가 발생했음. 외국산 우유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214톤에서 2021년 1만 982톤으로 800% 이상 폭증하였음³.
- 81년부터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불내증 또는 우유 알레르기 등 문제를 포함하여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과 다르게 본 급식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현직 영양교사들의 지적이 제기됨⁴.

<표2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축산물수급관리(보조)	214,046	86,378	86,541	163

2. 요구사항

- 이미 학생들은 우유가 아닌 다른 식품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우유 생산 목적으로 젖소의 반복적인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사업의 학교우유급식 내역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요구.

³ “우유재고 넘치는데 수입 급증...원유가격연동제 뭐길래”, 한국경제TV, 2021. 08. 12

⁴ “차이고 버려지는 ‘우유급식’” 대한급식신문, 2017. 03. 17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보조금 비율 50% 이상 예산 편성

1. 현황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9년 219,051백만원, `20년 200,163백만원, `21년 191,222백만원, `22년 168,783백만원, `23년 예산(안)은 148,525백만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나 축산업진흥 프로그램에서 상위 2번째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스마트 축사의 현황은 지난 2014년 23호에 불과하던 게 2021년 기준 4,700호(전체 15.6%)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11,000호로 늘려 10곳 중 3곳의 축사 스마트화 목표를 밝힌 바 있음⁵.
- 사료 자동급이기, 음수 관리기, CO2측정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는 점에서 약취 저감, 가축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컨설팅에 있어서 농가들이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턴트도 전국에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컨설팅 장비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⁶.

<표21>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민간경상보조	7,346	6,246	6,981	735
지자체 자본보조	45,389	49,103	42,817	△6,286
기타민간금융자금	138,487	113,434	98,727	△14,707

2. 요구사항

-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을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음. 2024년도 사업은 기존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지원하도록 정부 지침 마련 및 예산 편성 필요.

⁵ “사전컨설팅으로 스마트축사 꼼꼼하게 지원”, 영농자재신문, 2018. 06. 14

⁶ “스마트축산, 어디까지 왔나”, 축산신문, 2019, 03. 1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 대폭 증액

1. 현황

- 사업의 세부내역을 비교하였을 때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신설된 △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증액됨.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 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업의 산출 근거를 전향적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증액함이 필요.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율 단가 인상 필요가 부처에서 건의됨.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율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규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 또한 강조됨.

<표2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동물보호및복지대책	5,277	11,020	11,928	908

2. 요구사항

- 최근 3년 간 사업 달성도가 100% 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업의 산출 근거를 공격적으로 설정하여 예산 증액 필요.
- 정례화된 정부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등은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는 동물생산, 판매(경매) 업장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하며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정과제가 남아있음에 따라 이행 로드맵과 예산 확보 또한 필요.
- 현재 15.6억원으로 책정된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예산으로는 약 19,500마리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이 37.8만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5% 가량에 불과함. 유기견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목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사업비 대폭 증액 요구⁷.

⁷ “중성화 수술로 제주 유기견 3년새 2천 마리 줄어”, 뉴스1, 2023. 04. 06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에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1. 현황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사업은 2019년 신설되면서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 반려동물 놀이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있었으나, 2020년부터 내역 사업으로 △ 동물보호센터설치비 지원만 남아있음.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에 따른 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유기·유실 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 목적의 사업임.
- 지자체 보조율은 30~40%로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매년 개선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여 기관 간의 집행률 차이가 발생함. 부처는 집행부진 사유로 착공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으로 파악하였고, 국회는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주문함.
- 환경부의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를 국비 50%, 운영비를 국비 30% 비율로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본 사업은 설치비로만 30~40% 비율로 국비 지원하되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표2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반려동물인프라구축	3,526	4,693	7,041	2,348

2. 요구사항

- 동물학대 행위 및 유기동물 급증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물보호센터만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드웨어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 및 예산 추가 편성 요구.

말 산업 육성에 ‘말 복지’ 사업 예산 편성 필요

1. 현황

- 말 산업 가치 창출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2011년도 제정된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음. 23년도 예산안 기준 197.25억원 예산 중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 명목의 사업(4.3억원/ 2.18%)만 있을 뿐 이 사업마저도 퇴역마 복지 제공은 전무하며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 비중은 증가 추세이지만 이들의 이력관리도 부재한 상황임.
- 말고기 소비 촉진, 말고기 등급판정제도, 말 부산물 활용 개발 등으로 경주 퇴역마 활용 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주 퇴역마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 사육 및 관리 의무 등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예산 또한 마련되어야 함.

<표24>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말산업육성지원	23,044	21,994	19,725	□2,269

2. 요구사항

- 경주 퇴역마 등 용도 미정 퇴역마에 대한 이력관리를 도입하고, 경주마, 일반마 모두에 대한 보호관리 지원 등 말 복지사업 예산 편성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요구.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신 농작물 피해 ‘예방책’ 마련 중심으로

1. 현황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 40%의 사업으로 부처 집행율은 지난 3년간 100%인 반면 지자체의 실 집행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포획시설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로 제시되어 있음.(`19: 529마리/ `20: 298마리/ `21: 361마리) 본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인 바, 실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저감되었는지 추이가 제시되어야 함. 또한 사업 목표치 산출 근거에 단순히 전년도 포획 마릿수가 아닌, 피해지역별 유해 야생동물 개체군 및 작물 상황을 반영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
-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감전 등을 이유로 포획을 고수하나, 감전 사고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전기울타리 사용과 안전 교육 실시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음⁸.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회복제로 전환되는 포획 필요 개체수 연구가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야기되는 이유는 개체수 과밀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농가와 야생동물 서식지의 충돌, 산림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수급 감소 등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25> 농림축산식품부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350	333	333	-


2. 요구사항

- 본 사업의 예산은 단순 포획 마리수를 성과로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어가서는 안 되며 실제 농작물의 피해 감소 및 재발 여부, 포획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마련 등에 예산 편성 요구.
- 또한 유해야생동물 구제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면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예산 확보 필요.

⁸ “전기울타리 임의 설치로 감전사고 잦아...시공, 감독 강화해야”, 문화일보, 2022. 10. 19

장애인·빈곤

영역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 예산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⁹ 확대

1. 현황

- 2019년 7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표방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였음. 등급제 폐지는 대상자 수의 확대로 이어졌으나, 부족한 예산에 맞춰 설계된 판정 도구로 인해 기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고 85%의 이용자가 하루 5시간 이하의 급여 구간에 위치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24시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전무, 2022년 이용자들의 평균 시간은 127시간, 이를 150시간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판정 도구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여야 함.
- 또한 현재 서비스 수가는 최저임금 기준 평균 급여(법정수당, 사업주 부담금 포함)로 최대 98%가 지급되는 구조이며, 노동 강도 대비 적은 수가로 인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력 미매칭, 기관의 편법 운영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 운영 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수가를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인상하여야 함.
- 또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의 본문 중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여야 함. 해당 인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25,22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활동지원 예산은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2. 요구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중앙정부 차원 24시간 대상자 선정
 -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상이한 기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 활동지원 수가 획기적 확대 및 판정체계 개편을 통한 대상자 및 개인별 서비스 시간 확대.

⁹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서비스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1. 현황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21.8.)> 발표 이후,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예산이 21.5억 원 반영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의 기간 동안 탈시설 이행 계획 수립.
- 그러나,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48.억 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인 6,209억 원과 비교해보면 국가정책 불공정의 상징이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 일반논평5의 실행에 매우 부적합한 예산 반영임.

<표26>

(단위: 백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36-302)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1542-300)
회계구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 예산		629,008(+15,602)	4,834(+2,680)
연도별 투자계획	'24	715,786	10,439
	'25	737,260	21,980
	'26	759,378	36,309
코로나19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없음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고지원 대상 확대 추진	해당 없음

2. 요구사항

- 개인별 주거제공(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국토교통부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 자립정착금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서비스 등 초기정착서비스 확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1. 현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각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 운행범위 등 운행방식과 실제 대기시간에 영향을 주는 차량 1대당 운행률이 천차만별. 지역 간 편차 발생.
- 그러나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원이 적게 고용되어서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우려. 지자체 보유 차량이 동시간대에 모두 운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간대별 운행률은 더욱 감소할 것. 즉,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증가해야 함.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청구한 지자체 자료에서 전국 평균 대기시간은 약 30분.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약 49.2분임.
- 차량운전원은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 및 대기시간과 직접 연관. 즉시콜(예약없이 장애인콜택시 신청), 광역이동 운영에 영향. 전국 평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는 1.16명 불과. 운전원을 증원하여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을 75%까지 증가시켜야 이용자 욕구에 맞는 안정적 시행령 운영이 가능할 것.
- 하지만 정부안의 신규편성된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항목은 인건비를 제외,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만 포함. 운전원 인건비가 전국 평균 전체 예산 대비 56%인데 극히 일부 항목만 반영한 것. 일일 운행률 증가 어려움.
- 따라서 버스, 지하철, 상업용 택시 이용에 제약이 있는 보행불편장애인을 위해 대안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일일 운행률을 감안, 차량운전원 수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예산 필요.

2. 요구사항

-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 18시간 이상(8시간 근무 운전원 2인)을 전제로 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1. 현황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임. (현재, 유기홍의원과 조해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대표발의, 조해진대표발의)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각기 다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해석으로 인하여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국가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에서 국가는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도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2021. 6. 30.발표)'을 발표함에 따라 예산 변화 필요함.

2.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 13,487백만 원 편성.
- 330백만 원(1개 시설 연간 운영비) × 61개소 × 67%(국고보조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추가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반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1.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종중증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여야 함.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
-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는 서울시 350명, 경기도 200명, 전라남도 82명, 전라북도 10명, 경상남도 10명, 춘천시 44명 등 약 696명을 고용할 계획,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종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예산확보 필요.

2.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주 20시간 5,000명 지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기관 전담인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1,000명 지원 (※ 최종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로 전담인력 배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1.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부양의무자기준은 교육급여에서 **2015년**, 주거급여에서 **2018년** 폐지되었고, **2022년** 생계급여에서 완화(부양의무자의 연소득1억, 재산9억원 미만일 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세대일 때만 미적용하는 수준의 아주 미약한 완화에 머무르고 있음.
- 이로 인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228만명**, 생계급여 **157만명**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144만명**에 불과함. **2021년 3월** 생계급여 수급자 **136만명**, 의료급여 수급자 **144만명** 그리고 **2022년 3월** 생계급여 수급자 **151만명**, 의료급여 수급자 **143만명**인 것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의 급여사각지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생계급여 결정기준이 의료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 사회적 손실 수준이 높음.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단 1만 원의 최저 보험료 체납을 반복하며 기초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빈곤층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급빈곤층의 미충족 의료 욕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19.2%**, **30~40%**이하 가구의 경우 **18.5%**로 일반가구 **4.6%**나 수급가구 **17.4%**보다 높게 나타남. 복지부는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비수급자도 수급자와 비슷한 보장수준을 누릴 수 있다 강변하지만, 의료급여 확대와 기타 의료보장제도 개선은 취사선택이 아니라 병행해야 할 과제임.

2. 요구사항

- 모든 종류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2023년 3조 400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과 예산 증액이 필요함.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1. 현황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0여개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가 한달 급여로 바로 연결되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기준중위소득 도입 취지는 복지선정기준과 빈곤선을 설정하는데 사회의 상대적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인상률은 도입 전 최저생계비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2021년과 2022년 윤석열정부는 5%대의 높은 인상률 결정을 내렸다고 자랑했으나 기준중위소득은 여전히 실제 국민들의 소득 중간값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임.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출하게 되어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자료의 중간값에 비해 4인가구의 경우 24%, 1인가구의 경우 약 30%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2. 요구사항

-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수급비를 낮춰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조작함. 이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아 제도 효용성을 낮춤.
-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소득 중간값과의 차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오른 물가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이를 고려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 임금 인상, 근로능력평가 폐지

1.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음.
- 2023년 자활일자리 임금은 실비를 포함한 일급이 가장 높은 유형인 기술, 자격자 유형에서도 64,420원(8시간/시급 8,052원), 가장 낮은 근로유지형 유형에서는 31,020원(5시간/시급 6204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시급 9,620원과 비교할 때 각각 83%, 64%에 불과함.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자립과 자활을 돕는다는 목표와 상반됨.
- 자활일자리 종류나 양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함. 자활일자리 참여자들은 과거 노동경험과 연결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대기자 숫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함. 자활지원 예산 전체는 14% 늘었으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은 0.4% 도리어 삭감되었음. 자활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자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일선 사회복지 현장은 자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더 까다로워졌을 것임.
- 더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인 근로능력 유무는 최근 2개월의 진단서 및 역량평가를 통해 이뤄져 각각의 개별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있음. 자활일자리 참여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고 싶더라도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실업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도 있음.
- 자활사업은 강제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여서 안 됨. 조건부과가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로 빈곤층에게 더 나은 사회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실제 탈빈곤에 이를 수 있도록 변화해야함.

2. 요구사항

- 근로능력평가 폐지. 필요한 일자리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욕구조사 및 대기자 수를 조사하고, 자활기관과 지자체를 통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의 개수를 늘려야 함.
- 자활사업 단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참여기간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함.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1. 현황

-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4.1% 늘어났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과 지급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5.47%였으므로 4.1%의 인상은 확대된 선정기준도 따라잡지 못한 수준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게 된 이들에게 생계, 주거,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코로나19와 같은 재해가 빈곤층에게는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기로 남고, 반지하 수해참사를 비롯한 재해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충분히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지원기준을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몇가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임. 보증금이나 약간의 저축, 예금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한다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음. 사나흘에서 최대 열흘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을 거절하거나 작년 소득을 근거로 거절하기도 함.

<표27> 긴급 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긴급 복지	666,735	302,957	315,486	12,529

2. 요구사항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매년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하려면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임.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긴급지원 결정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됨.
-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개인의 위기를 한 두 가지 위기 징후로 포착할 수 없게 함.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함.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1. 현황

- 법률은 ‘노숙인 등’을 거리, 시설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지역의 쪽방 거주자, 고시원·여관·여인숙·PC방·만화방·사우나(짬질방) 등 비적정 주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음.
-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모두 강행력이 없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양돼 있어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각종 지원정책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함. 또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노숙인시설을 경유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신청권을 제약함. 더불어, 이의신청 등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최소한의 권리적 성격도 보장하지 않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며, ‘노숙인 등’ 의료이용의 차별을 제도화 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해악을 뼈저리게 절감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해당 제도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를 1년 단위로 유예하는 고시만을 지정할 뿐 폐지하려 하지 않고 있음.

2. 요구사항

-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증가한 예산은 프로그램 지원예산들로 홈리스 지원체계를 재편(탈시설, 의료지원 차별 해소, 거리홈리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하기 위한 계획은 없음.
- 보건복지부는 작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노숙인 등 복지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행하고, “중앙단위에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자체의 거리노숙인 보호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노숙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건의한 바 있음. 따라서, 2024년 노숙인 등 복지 예산은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 다음 항목을 확충할 필요 있음.
- 노숙인 등 의료지원 강화 = 노숙인1종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과) : 15억원 편성(2021년 노숙인1종 기금부담금*2) / 거리노숙인 현장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자립지원과) : 32억원 편성(2023년 서울시 예산 기준, 40인 이상 거리노숙인 거주 및 진료소 미설치 4대 지역).
-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 16억원 편성(4개소 부설설치 예산*6) : 40인 이상 거리노숙인 거주 지역 중 생활시설 내 부설설치 기관의 분리 설치(춘천, 원주, 인천, 울산, 전주), 미설치 지역 설치(충남).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사회공공성

영역

민영화 철회, 사회공공성
예산 대폭 확충하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1. 현황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하, 옥상 거주가구,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가구(비주택)을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는 2020년 기준 176만가구로 전체의 8.4%에 이룸.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5%에 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1,192,074채로 5.7%에 불과함.
-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삭감. 강통전세, 반지하 수해참사와 같은 최악의 주거난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임.
- 지난해 지출하지 않아 수정된 결산을 포함하면 증감 폭은 줄어들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면 예산 미집행, 감축 모두 심각한 문제.

<표28>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B-A)
국민임대주택(용자)	620,082	550,225	300,114	▽250,111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	2,105,595	1,970,467	1,896,802	▽73,665
공공임대주택(용자)		233,536	117,958	▽115,578
행복주택(용자)	1,359,043	1,319,799	1,004,089	▽315,710
다가구매입임대(용자)	5,625,870	5,459,932	3,237,000	▽2,222,932
전세임대(용자)	4,004,771	4,775,041	4,174,950	▽600,091
전세임대경상보조	105,814	139,893	123,700	▽16,193
영구임대 출자	47,642	225,713	179,683	▽46,030
행복주택 출자	182,576	775,293	684,607	▽90,686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781,021	2,971,050	2,839,300	▽131,750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34,972	472,943	204,577	▽268,366

2. 요구사항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빈곤 가구에게 가장 유력한 주택 대안인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중한 미래 자원임.

-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모두 복구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도심 생활권내 주거안정을 꾀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매입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함.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예산 삭감

1. 현황

- 정부는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총 10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하지만 모태펀드 조성은 노인·장애인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을 앞세운 금융자본 논리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중앙사회서비스원에 펀드의 관리자, 사실상 실무 역할을 부여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수익 추구에 집중하는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역할은 배제되고 사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정부가 첫 펀드 도입 이후 일부 개선된 지표를 앞세워 모든 분야에서 추진중인 민영화·산업화 기조를 본격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표29>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	-	1,000	순증

2. 요구사항

-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1. 현황

- 코로나19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045천명으로 예상되지만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246개소로 장기요양 인정노인 4,247명당 1개소에 불과함.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증가가 제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시설 확충 예산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은 501억 원으로 2022년 619억 원 보다 19.3% 감소함. 일반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56억 원으로 지난해 93억 원 대비 39.9%가 감소하고,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일반요양시설 신축은 기대할 수 없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 또한 2023년 327억 원으로 전년대비 34.2% 감소했고, 2023년 신축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8개소로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일반형의 경우 50%, 치매 전담형의 경우 80%로 정해져 있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CCTV설치 및 환기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 센터의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또한 의미 있는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30> 노인요양시설 확충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노인요양시설 확충	104,045	61,990	54,765	△11,937

2. 요구사항

- 고령화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 요양 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 편성해야 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부담율을 치매 전담형 시설과 같은 80%로 높일 필요가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1. 현황

-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3년 492억 원으로 전년 609억 원에서 대폭 삭감(△19.3%)되었음. 국공립 신축이 전년대비 29.3% 삭감되었고, 국공립 장기임차 46.6% 삭감, 매입 어린이집 예산도 33.3% 삭감된 영향임. 다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은 신규 2개소로 20.9%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에서 크게 선회한 것임. 국공립 신축은 정책 목표 550개에서 한참 모자란 33개소 예산이 편성되었음.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10% 줄어든 35억 원이 편성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2019년 12월 기준 미취학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6.9%였으며 만 0세는 20.2%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의 이용률은 80.8%이며, 만 0세의 경우 47.1%까지 급증함(영유아주요통계, 2020, 2022). 최근 수년 간 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임.

<표31> 어린이집 확충/기능보강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B)	2023년 예산(A)	증감(B-A)
어린이집 확충	60,881	60,903	49,170	△11,733
어린이집 기능보강	6,866	3,859	3,473	△386

2. 요구사항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공공보육이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의 경우 계속해서 예산 집행률이 100%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돌봄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충

1. 현황

- 노인, 장애인,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은 연평균 최소8.7% ~ 최대 23.7% 재정투입 확대. 그러나 사회서비스 시설 5.9만 개 중 민간운영 88%, 민간위탁 11%, 공공 직영 1%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비중이 압도적. 국공립 기관의 수가 정체 됨.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육-기관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현격한 질 격차 발생.
-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직접서비스를 중단하고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타 공공기관과 통합을 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은 위기에 처해 있음.
-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1개소 당 인건비 20명 기준 50%, 사업비는 1개소당 10억 8천만 원 기준으로 3년 미만 50%, 3년 이상 30%만 지원되고 있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임에도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

<표3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723	24,610	30,219	5,609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3,436	15,959	14,834	△1,125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 등을 제외한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2. 요구사항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정부위탁사업 직접 수탁)서비스 제공 확대.
 - 종합재가센터가 없는 106개 기초자치단체 설립시 약 60,950백만원 증액 필요 : 시설비 2억원(100%), 인건비 30명, 1인당 2천4백만원 (50%), 사업운영비 3천만원(50%) 지원시.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 70% 상향.

도시철도 무임수송액 국고 보조

1. 현황

-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85년), 장애인('91년) 등으로 확대되었음.
 - 법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해서 운영기관의 부담을 주지 않았으나 '21년 기준 19.5%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41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있음.
-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최근 5개년('17~'21년) 기준 무임수송손실 평균액은 5,41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액 1조 3,175억원의 41%에 해당. 모든 부담이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으로 떠 넘겨지고 있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 시설이나 차량에 대한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결국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

<표33> PSO 보상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PSO 보상	379,561	384,474	397,896	13,422

2. 요구사항

-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에 대한 국비 예산 증액 3,800억원 반영을 요구함.('19년 손실액 6,230억원의 60%).
 - 2023년 정부 예산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58,500백만원 증액이 의결된 바 있음.
 -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국회 논의 중임.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 예산 신설

1. 현황

- 각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있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고물가 시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저해하여 탈탄소 전환에 역행.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아닌 적극적인 할인 정책이 필요.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절감해야 함.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담하고, 이용 확대에 따른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이 동반될 필요.
- 해외에서도 다양한 무상교통, 요금 할인 정책이 시행 중이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독일 :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호조치로 22년 6~8월(3개월) 9유로(1.2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23년 5월부터 49유로(6.5만원) 무제한 패스(독일티켓, DeutschlandTicket) 상시 도입 예정.

2. 요구사항

-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 위한 시범 사업 실시 및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무제한 정기권 도입 방향>

- 적용 수단 : 도시철도, 버스, 철도 등 통합 적용
- 적용 지역 : 전 지역을 목표로 하되 우선 시범 사업 실시(지역 균형 고려)
 -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인프라 확대 필요
- 1회권 대비 할인 수준 : 30%, 50%, 70% 등
- 재정 부담 : 중앙정부(교통시설특별회계 등)와 지방정부 분담
 - 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비율을 조정해서(현 73%) 대중교통운영지원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
 -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목적세 신설 : 유럽과 북미 도시들처럼 부동산 관련 조세를 대중교통 지원으로 전용 등
 - 지방정부는 주차장 요금, 혼잡통행료, 교통혼잡유발기금 등을 대중교통 운영지원 부문으로 활용
- 운영 체계 : 광역 단위 다양한 교통수단을 묶는 통합적 운영 체계 수립
- 공급 구조 :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인력 충원, 공영체계 확대와 연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 부담 확대

1. 현황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관리운영비 대부분을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전입금’에 의존, 국민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100억원 정액지원으로 국고부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1988년~1991년까지 국고전액지원이었으나 지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 100억 원만 지원 중임.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면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기금운용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을 것임. 2020년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한 관리운영비는 총 6조 8,397억원에 달하며, 1992년부터 2020년말까지 가입자가 부담한 6조 8,397억원의 금액을 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6.27%로 운용했다면 2020년말까지 총 11조 9,930억원의 기금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표34>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8420-841)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8420-841)	10,000	10,000	10,000	0

2. 요구사항

- 국가사무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성을 높이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적으로 관리운영비의 10%로 국고부담을 확대하고 점차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정부 예산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45,159백만원 증액이 의결된 바 있음.

광주·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확충

1. 현황

- 정부가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 여부를 이르면 5월 결정할 예정임. 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경제성을 문제 삼고 있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매기는 셈법임. 이런 평가방식은 사라져야 함.
- 공공병원은 코로나19 3년 간에도 시민 생명의 보루 역할을 해왔음.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대비 9.7%에 불과하지만, 2020년 3월 감염병전담병상의 81.2%를, 2021년 1월 92%를, 2021년 11월 49.8%, 2022년 3월 26.8%를 담당하였음.
- 최근 응급, 중증외상, 소아진료, 지역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이는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결과임. 공공의료 공백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의 주된 원인임.
- 그럼에도 지방의료원 설립, 확충예산은 매년 사실상 '0원'이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일부 공공병원의 설계비, 연구용역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유의미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음.

<표35> 지방의료원 신설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항목 없음)	-	-	-	-

2. 요구사항

-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 함. 70개 중진료권마다 지방의료원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함.
- 공공병원 설립, 확충에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중단해야 함.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지원비율 상황

1. 현황

- 지난 해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방지했고 이는 건강보험 위기를 낳았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일몰제 폐지와 지원비율 상향을 요구했음. 그러나 최근 국회는 정부여당의 의중대로 20%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데 그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한시조항으로 존재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음. 지난 해 '수원세모녀'처럼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난 6월 기준 67만3000 가구나 됨. 그런데도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올려 올해는 7%를 넘겼음.
-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프랑스는 50%가 넘고 가까운 일본도 39%이며 대만은 국고지원을 36%를 법제화했음. 이에 비해 한국은 12%에 불과함. 이처럼 한국의 국고지원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은 높은 상황임.
- 윤석열 정부는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예정임. 긴축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기조임. 지금도 보장성이 낮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은 나라에서 이는 의료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임.

<표36>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회계)	7,655,350	8,684,293	9,149,408	5.4%

2. 요구사항

-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 20%를 지켜야 하고, 지금까지 미납한 32조원을 납부해야 함.
- 나아가 건강보험 국고 부담 비율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증액해야 함. 일몰제를 없애고 이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함.

모성보호지원 일반회계로 전환

1. 현황

- 모성보호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하는 단위사업 이름임. 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로 지출되고 있음.
- <표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 일반회계에서의 모성보호지원 예산은 2022년에 비해 증액된 부분이 없음. 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이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상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모성보호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또한, 2023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됨.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한함(이전에는 통상임금 80%). 저출생 추이가 계속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모성보호급여는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임.

<표37> 일반회계 모성보호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모성보호지원	220,000	300,000	300,000	00

<표38>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모성보호육아지원	1,685,010	1,933,301	2,100,641	167,340

2. 요구사항

-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도 모성보호지원 예산을 훨씬 확대해야 함.
- 모성보호급여는 고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구의 지속적 유지 측면에서 국가가 따라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특히 실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계정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1. 현황

-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총 150만원).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근로자 등이 대상임.
-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약 28억 정도 증액되었음. 그러나 이는 최근 3년간 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목표치를 적게 설정한, 보수적인 결과로 보여짐. 2020년도 수급자 수는, 12,342명, 2021년도 11,565명, 2022년도 10,451명으로 2023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임. 사업 초기에 낮은 인지도와 고용시장 악화, 저출생으로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고는 하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감안하였을 때, 목표치를 줄이기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시장 악화를 감안한다면 소득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출산여성들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출산급여는 2023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그러나 미가입자들의 경우, 여전히 150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지원조차 없음.

<표39>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899	12,776	15,572	2,796

2. 요구사항

- 출산과 육아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임.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야 함. 또한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불평등하게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 자체도 인상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나아가 육아휴직 지원 예산도 신설해야 함.

국민연금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1. 현황

- (출산크레딧)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둘째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지원하고 5명 이상은 최대 50개월 지원하고 있어 OECD 타국 대비 매우 부족하며 경력단절 기간 보상에 미흡
- 출산크레딧의 일반회계 부담률이 과소(일반회계 30%, 기금 70% 부담, 군복무크레딧은 전액 일반회계)하며 출산시점이 아닌 급여 발생시점 지원(사후지원)으로 미래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함
* 국민연금공단 추계에 따르면 2083년까지 총 199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역시 6개월만 사후지원, 기준소득 역시 A값의 50%만 지원하여 실제 급여 상향효과가 적음
- (실업크레딧) 현재는 생애 최대 12개월의 실업 기간에만 제한적 지원하며, 본인이 25%를 부담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신청률이 61.2%로 상당히 많은 미신청자가 발생 중

<표40> 크레딧 예산

(단위: 증감률, 백만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률(B-A)
출산크레딧 급여(8420-842)	199	338	525	55.3(187)
실업크레딧 지원사업(7432-441)	936	31,582	35,500	12.4(3,918)

2. 요구사항

-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출산시점에 100% 국고로 지원하며,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24개월 지원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전 기간으로 지원 기간 확대, 전역시점에 지원
-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하고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고 또는 실업기금으로 지원
- (직업훈련 크레딧)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 및 적정연금 도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 현황

- '22.7.부터 일정 자산,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2020. 12. 기준, 가입이력이 전혀 없어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무기여자는 납부예외자 67만명, 장기체납자 17.6만명, 적용제외자 375.7만명으로 사각지대 해소 정책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을 납부예외자로 제한하기보다는 사각지대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는 1인 1연금으로의 국민연금 가입구조 단순화 및 적용제외 최소화라는 가입구조 개편과 병행하여야 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 가입기간 미보유자 비율이 36.4%에 달하고 평균 가입기간은 34.4개월에 불과하기에 좀 더 관대한 지원이 필요

<표41>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률(B-A)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26,525	38,214	44.1(11,689) ¹⁰

2. 요구사항

- (지원대상 확대)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만 지원하는데서 확대하여, 성실납부자 및 가입구조 개편을 전제로 사각지대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
- (지원기간 확대)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형평을 맞추어 36개월 지원으로 확대해야 함

¹⁰ 일반회계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3개월간 지원하였던 것을 2023년에는 5개월간 지원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116억 8,900만원(44.1%) 증액된 382억 1,400만원이 편성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보험료 지원 확대

1. 현황

-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는 누구나 동의하는 시급한 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 4대보험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것과 함께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함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지원 축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열악한 노동자들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왔음.
 - * 2012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중 10.5%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하지만 2018년 이후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축소하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노동자(신규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 이에 따라 입·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노동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2023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최저임금 130%로 일부 상향하였으나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기간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

<표4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률(B-A)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231-300)	810,347	1,046,594	1,076,405	2.8(29,811)

2. 요구사항

-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1. 현황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¹¹ 대부분을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그만큼 기금운용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
- 1988년~1991년까지 국고전액지원이었으나 지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 100억 원만 지원하여 국민연금기금이 98.2%를 부담하고, 국고는 1.8%만 부담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에 달하는 국고 지원 및 6%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법률에서 규정, 매년 국고지원 중이며, 일본과 노르웨이 공적연금은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 부담하고 있음
- OECD도 한국 국민연금은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적 산식에 따른 급여(가입자평균소득, 즉, A값에 연동된 급여를 말함)로 운영되므로, 해당 급여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인바, 이에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국고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권고하였음¹²

<표43>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률(B-A)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8420-841)	10,000	10,000	10,000	-

2. 요구사항

- 국가사무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성을 높이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적으로 관리운영비의 10%로 국고부담을 확대하고 점차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¹¹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지출하는 경상적 관리 비용을 의미하며,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공단관리운영 정보화 운영비(7378-614)를 합산하여 산출됨.

¹²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2022년 9월 발표) 97쪽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1. 현황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나 사회진출 도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 전국에 220개가 개설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사업을 진행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000명으로 추산.
-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95만원인 반면, 학교밖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함. 학교밖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편성액의 1/20 수준에 그침. 따라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함.

<표44> 학교밖청소년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학교밖청소년지원	22,924	25,093	27,316	2,223

2. 요구사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 예산을 20% 증액해야 함.
-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검정고시나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도 포함해야 함.
- 교육부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배분해야 함.

내일이룸학교의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1. 현황

- 내일이룸학교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2년 현재 전국 12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약 3~10개월 간 과정으로 제공함. 현재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생산성본부임.
-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000명으로 추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2022/12/23).
-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95만원인 반면, 학교밖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함. 학교밖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편성액의 1/20 수준에 그침. 따라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함.
- 더군다나, 내일이룸학교는 매년 210명에 한정해 지원을 하고 있어, 대상자 확대도 필요함.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학교인 내일이룸학교의 훈련생 10명 중 3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이 훈련생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사업비용 예산을 확충해야 함.
- 하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이 모두 3,113백만원으로 동일함.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에는 변동이 없음.

<표45> 내일이룸학교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내일이룸학교	3,113	3,113	3,113	0

2. 요구사항

- 내일이룸학교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취약·위기 청소년에게는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함.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소를 설립 운영해야 함. 따라서 현재 설립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함.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설

1. 현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 학교밖청소년에게는 교통비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2021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이 요구하는 1순위는 84%가 선택한 '지원센터 이용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었음.
- 최근,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액 지방비(1770만원)로 중학생나이의 청소년은 3만원 고등학생나이의 청소년은 월5만원을 지원함. 전라북도의 경우, 1인 월 3만원씩 총 6회에 걸쳐 교통비를 교통카드 형식의 충전식 카드발급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한달 이동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
- 현재 급식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음.

2. 요구사항

- 모든 학교밖청소년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야 함.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매칭하여, 월 5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함.
- 교육부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배분해야 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 20-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의 65.1%(1,471명), 30대 사망자의 48.4%(1,874명)이 자살로 사망했음. 다른 연령대의 평균자살률은 감소하는데, 20-30대만 평균자살률이 상승함.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2021년 1월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도입, 2022년부터 마음건강 바우처를 통해 실시함.
- 2022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규모는 1만 5천 명(예산 57억 원)으로, 이는 19세~34세 청년인구의 0.1% 수준에 해당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울장애 유병률이 19세~29세 8.3%, 30세~39세 6.8%이고,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이 19세~29세 4.9%, 30~39세 5.2%임. 그리고 2020년 기분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20대·30대 청년은 약 14만 6천 명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1만 5천 명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마음건강 바우처는 최초 3개월간 제공된 후 3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재판정하여 최대 1년까지 제공. 하지만 정신건강이 1년 이내에 치유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연장기간을 늘려야 함.
- 청년마음정신지원사업은 지역균형특별회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속한 사업임. <표>에서 보듯이,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함.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증액이 되지 않았음.

<표4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5,670	5,670	0

2. 요구사항

-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청년 누구라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을 대상자를 현재보다 크게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마음건강 바우처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청년조기중재센터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

1. 현황

- 청년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지원 기관임.
- 만성 정신질환의 75%는 24세 이전에 발병하며, 발병 후 5년 내 전체 질병의 경과와 예후가 결정됨.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가 도입됨.
- 이 센터는 건강증진기금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통합정신건강사업의 예산으로 설립·운영되며,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됨. 이 조기중재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조기중재팀으로 구성되거나 개별적인 센터로 독립되기도 함.
- <표9>에서 보듯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포함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14억6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에 불과함. 비록 2022년까지 청년중재센터의 설치를 완료했음. 하지만 더 많은 센터의 증설이 필요하고 각 센터의 사업확대가 필요하므로 당분간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따라서 보다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됨.

<표47>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8,869	29,099	30,594	△1,459

2.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구 20만 명당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준해서 보자면, 15세~34세 청년 인구 수가 2021년 기준 약 1,226만 명이므로, 청년조기중재센터는 전국에 최소 61개소가 설치되어야 함.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팀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초기 증상을 보이는 청년만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가 보다 효과적임. 따라서 팀 구성에 맞춰진 예산이 아니라 센터 설립과 운영에 맞춰진 예산이 필요함.
- 향후 수요 증가를 고려한 인력충원예산을 설정해야 함.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노동
영역**

공공부문 비정규직-돌봄
노동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예산 편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요구

1. 현황

- 공공부문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위탁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100만 명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 정부는 매년 인력 규모, 인건비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 총액을 결정하고, 이는 해당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하지만, 최초 설정된 1인당 인건비 기준이 너무 낮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준용하여 조정되다보니 저임금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공무원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더구나 최근 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인건비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
 -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였음.
- 또한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등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에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과 공무원의 수당 차별 시정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2021.3월).

2. 요구사항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 방지, 저임금 해결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처우 개선 예산 반영.
-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소속 기관 정규직(공무원 또는 일반정규직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사회보험료 지원

1.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발생,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취약성 드러남.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저소득, 노동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규모 및 소득감소 상황 파악 시급 →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우선과제 추진 필요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불안정에 의한 기존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사회보험 미가입노동자를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함

2. 요구사항

1) 취약계층/불안정/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① 두루누리 적용 노동자 +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중앙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적용 대상(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건설별목업, 예술인, 특고노동자) + 중앙정부의 가사노동자
- 지원내용과 방식
 - 두루누리 사업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자 부담금 전액(고용보험, 국민연금 20%) 지원
 - 건강보험 노동자 부담분(3.43%)의 80% 지원(건설일용노동자 지원과 동일)

②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특고 산재보험료 지원: 중앙정부 경감분(50%) 이외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50%), 최대 1년 지원
- 특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 특고 대상 대하여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년 지원

1. 현황

-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노동 동향의 파악, 집단체불의 예방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임.
- 전국의 노동 관련 신고사건처리, 체불임금 청산 지도와 함께 임금체불예방, 남녀고용차별의 개선과 같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업무까지 포괄해서 맡고 있음. 근로감독관은 공무원 내에서도 ‘기피 직렬’이며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음.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2021년 7월 근로감독관 정원은 총 3,122명이며 1건당 처리소요기간은 41.8일이라고 밝힘. 그러나 1건당 처리소요기간이 아닌 근로감독관 1명이 처리해야하는 사건의 수를 확인해봐야하며 임금체불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처리소요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문제 되던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주52시간 근무감독 시행예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내밀하고도 고도의 업무 능력이 필요로 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2. 요구사항

-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예산 마련
 -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필요함.
 -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이 1년 동안 담당하는 사건의 양은 289건에 달함.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사건 수 대비 근로감독관 수가 아닌 총 취업자 수 대비 근로감독관 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로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시범 시행
 - 법안 마련.

민간·가정 어린이집교사 차별 해소 예산 확충

1. 현황

-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하여 교사 기준 월 269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인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최저임금 수준임. 2021년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국공립 인건비 기준표의 1호봉으로 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제한적일 뿐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여 현장 적용에 한계가 많음.

<표48>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영유아보육료 지원	3,395,239	3,202,771	3,025,145	△177,626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기관 보육료 지원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음

2. 요구사항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공립 인건비 기준 적용.
 - 2023년 현장 실태 파악 후 필요 예산 산출하여 2024년 예산에 반영.
 -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관지원금과 인건비 분리.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내 인건비성 예산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로 통합하여 편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때에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1. 현황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 장애인활동지원사 2023년 급여 단가는 기본급여 기준 15,570원(국고보조율은 67%)으로 월 기준 환산시 1인당 197만 원으로,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49> 장애인활동지원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3 예산(B)	증감액(B-A)
장애인활동지원	1,521,619	1,740,523	1,991,879	251,356

2. 요구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을 생활임금에 근접한 최저임금의 130%로 책정하고 직접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운영비를 단가의 80%로 가정할 때 장애인활동지원단가를 20,75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증액해야 함.

구분		산출근거	금액
직접 인건비	기본급	2023년 최저임금 9620*130%	12,506
	주휴수당	기본급/5	2,501
	연차수당	16일, 평균근속 5년기준	770
	법정휴일수당	17일 2023년 기준	818
	직접인건비 소계(A)		
인건비성 경비	4대보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1,731
	퇴직금	(A)/12	1,383
	인건비성 경비 소계(B)		3,112
기관 운영비	순수기관운영비(C)	(A)/80%	1,036
합계 (A)+(B)+(C), 원 단위 절상			20,750

‘윤석열식 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예산 요구 의견서

평화

영역

**‘힘에 의한 평화’ 불가능,
과도한 국방비 삭감하라!**

안보 딜레마 격화하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1. 현황

-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7조 143억 원이 책정되었음. 주로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169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2022년 군사비 지출 세계 9위에 올랐으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2.7%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북핵·미사일 작전 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됨. 정부는 3축 체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으며, 3축 체계 개념이 정립된 2016년 이래 2022년까지 약 33조 원을 집행했음. 이에 더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3축 체계 사업에 총 30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철매-II 성능개량 2차, 대형공격헬기 2차,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장보고-III Batch-I, II(잠수함), 해상작전헬기, 장사정포 요격체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등 약 50개 사업에 5조 2,954억 원이 책정되었음.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임.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선제 타격, 지도부 참수 작전 등이 포함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사업임. 특히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개념인 킬 체인은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어 그 개념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킬 체인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도발 징후 포착 30분 이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게 운용해야 함. 그러나 선제 타격을 결정할 만큼 완벽한 탐지가 쉽지 않으며 북한의 움직임이 ‘임박한 공격 징후인지’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계획임.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
- 선제 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큰 문제임. 한국과 미국이 선제 타격 등이 포함된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전술핵 투하도 가능한 F-35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자, 북한은 지휘부 공격 시 자동 핵 타격, 핵 선제 공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핵무력 법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북한은 킬 체인과 KAMD 등에 맞서 이동식 발사대, 달리는 기차, 저수지 SLBM 발사 등 미사일 발사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찰과 감시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액체연료에 비해 탐지와 대응이 어려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음.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KN-23, KN-24와 같이 저고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도 지속하고 있음.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화, 고도화되는 가운데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 예산을 생각할 때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음.

-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음. 남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만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모든 경제력을 군사력에만 쏟아부어도 남한의 국방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미임.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는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임. 결국 상호 위협 감소,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은 불가능함.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 남북 사이 대화 채널이 끊긴 채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긴장을 낮추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전쟁 불사’만을 외치고 있음.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음.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으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정부가 추구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올 뿐임.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해왔음.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국방예산이 모자라서, 무력시위가 부족해서 한반도 평화가 오지 못한 것이 아님.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음.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더욱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음.

2. 요구사항

- 선제 타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함.
- 과도하게 지출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삭감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